|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 공고**《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이 2012년 12월 10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6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최고인민법원 2012년 12월 28일**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2012년 12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63차 회의 통과)섭외(涉外) 민사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동 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제1조** 아래의 민사관계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1)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공민, 외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인인 경우(2)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일상 거주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3)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4) 민사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되는 법률적 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경우(5)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제2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을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섭외민사관계는 인민법원은 당해 섭외민사관계가 발생할 때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제3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과 기타 법률의 동일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海商)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등 상사분야 법률의 특별규정과 지식재산권 분야법률의 특별규정은 예외로 한다.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이 국제조약의 적용과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42조 2항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95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68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84조 1항 등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이 이미 국내 법률로 전화되었거나 전화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5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이 국제관례와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42조 3항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95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68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84조 2항 등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당사자의 섭외민사관계 적용 법률 선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선택의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제7조** 일방 당사자가 쌍방이 협상으로 선택한 법률이 분쟁 섭외민사관계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선택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제8조** 당사자가 1심 법정변론 종료 전에 협상을 거쳐 적용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허락해야 한다.각방 당사자가 동일 국가의 법률을 인용하고 또 그 법률적용에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섭외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9조** 당사자가 계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아직 발효하지 아니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국제조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공이익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0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공이익과 관계되거나,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도 섭외민사관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적용을 배제할 수 없거나 또는 충돌규범을 거필 필요 없이 직접 섭외민사관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규정한 강제성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1) 노동자 권익보호와 관계되는 경우(2) 식품이나 공공위생안전과 관계되는 경우(3) 환경안전과 관계되는 경우(4) 외환관제 등 금융안전과 관계되는 경우(5) 반독과점, 반덤핑과 관계되는 경우(6) 강제적 규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제11조** 일방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섭외민사관계 연결점을 조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기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법률 적용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제12조** 섭외민사 분쟁해결이 다른 섭외민사관계의 확인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선결문제 자체의 성격에 따라 그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제13조** 2개 또는 그 이상의 섭외민사관계와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안건별로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제14조** 당사자가 섭외 중재합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고 중재기구나 중재지역도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여 당해 중재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제15조** 자연인이 섭외민사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종료될 때 거주지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여 이미 그 생활중심으로 된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에서 규정한 자연인의 일상거주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병치료, 노무파견, 공무 등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제16조** 인민법원은 법인의 설립등록지를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등록지로 인정해야 한다.**제17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제공방식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효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루트, 또는 중외 법률전문가의 제공방식 등 합리적인 루트를 통해도 여전히 외국 법률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법률 조회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외국 법률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률 조회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8조** 인민법원은 마땅히 적용해야 하는 외국 법률의 내용 및 이해, 적용에 대한 각 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당사자가 당해 외국 법률의 내용과 이해 및 적용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인정한다.**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되는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문제는 이 규정을 참조한다.**제20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시행 후에 발생한 섭외민사 분쟁사건을 이 해석 시행 후에도 아직 심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 해석을 적용하며, 이 해석 시행 전에 이미 심리를 완료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 본 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해석을 준용한다.  |  | **最高人民法院公告**《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已于2012年12月1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6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3年1月7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2年12月28日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2012年12月1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563次会议通过）为正确审理涉外民事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规定，对人民法院适用该法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民事关系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 （一）当事人一方或双方是外国公民、外国法人或者其他组织、无国籍人； （二）当事人一方或双方的经常居所地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三）标的物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四）产生、变更或者消灭民事关系的法律事实发生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 （五）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的其他情形。 **第二条**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实施以前发生的涉外民事关系，人民法院应当根据该涉外民事关系发生时的有关法律规定确定应当适用的法律；当时法律没有规定的，可以参照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规定确定。 **第三条**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与其他法律对同一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规定不一致的，适用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的规定，但《中华人民共和国票据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等商事领域法律的特别规定以及知识产权领域法律的特别规定除外。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对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没有规定而其他法律有规定的，适用其他法律的规定。 **第四条** 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涉及适用国际条约的，人民法院应当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四十二条第二款以及《中华人民共和国票据法》第九十五条第一款、《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六十八条第一款、《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第一百八十四条第一款等法律规定予以适用，但知识产权领域的国际条约已经转化或者需要转化为国内法律的除外。 **第五条** 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涉及适用国际惯例的，人民法院应当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四十二条第三款以及《中华人民共和国票据法》第九十五条第二款、《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六十八条第二款、《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第一百八十四条第二款等法律规定予以适用。 **第六条** 中华人民共和国法律没有明确规定当事人可以选择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当事人选择适用法律的，人民法院应认定该选择无效。 **第七条** 一方当事人以双方协议选择的法律与系争的涉外民事关系没有实际联系为由主张选择无效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八条** 当事人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协议选择或者变更选择适用的法律的，人民法院应予准许。 各方当事人援引相同国家的法律且未提出法律适用异议的，人民法院可以认定当事人已经就涉外民事关系适用的法律做出了选择。 **第九条** 当事人在合同中援引尚未对中华人民共和国生效的国际条约的，人民法院可以根据该国际条约的内容确定当事人之间的权利义务，但违反中华人民共和国社会公共利益或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强制性规定的除外。 **第十条** 有下列情形之一，涉及中华人民共和国社会公共利益、当事人不能通过约定排除适用、无需通过冲突规范指引而直接适用于涉外民事关系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人民法院应当认定为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四条规定的强制性规定： （一）涉及劳动者权益保护的； （二）涉及食品或公共卫生安全的； （三）涉及环境安全的； （四）涉及外汇管制等金融安全的； （五）涉及反垄断、反倾销的； （六）应当认定为强制性规定的其他情形。 **第十一条** 一方当事人故意制造涉外民事关系的连结点，规避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的，人民法院应认定为不发生适用外国法律的效力。 **第十二条** 涉外民事争议的解决须以另一涉外民事关系的确认为前提时，人民法院应当根据该先决问题自身的性质确定其应当适用的法律。 **第十三条** 案件涉及两个或者两个以上的涉外民事关系时，人民法院应当分别确定应当适用的法律。 **第十四条** 当事人没有选择涉外仲裁协议适用的法律，也没有约定仲裁机构或者仲裁地，或者约定不明的，人民法院可以适用中华人民共和国法律认定该仲裁协议的效力。 **第十五条** 自然人在涉外民事关系产生或者变更、终止时已经连续居住一年以上且作为其生活中心的地方，人民法院可以认定为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规定的自然人的经常居所地，但就医、劳务派遣、公务等情形除外。 **第十六条** 人民法院应当将法人的设立登记地认定为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规定的法人的登记地。 **第十七条** 人民法院通过由当事人提供、已对中华人民共和国生效的国际条约规定的途径、中外法律专家提供等合理途径仍不能获得外国法律的，可以认定为不能查明外国法律。 根据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十条第一款的规定，当事人应当提供外国法律，其在人民法院指定的合理期限内无正当理由未提供该外国法律的，可以认定为不能查明外国法律。 **第十八条** 人民法院应当听取各方当事人对应当适用的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适用的意见，当事人对该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适用均无异议的，人民法院可以予以确认；当事人有异议的，由人民法院审查认定。 **第十九条** 涉及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民事关系的法律适用问题，参照适用本规定。 **第二十条**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施行后发生的涉外民事纠纷案件，本解释施行后尚未终审的，适用本解释；本解释施行前已经终审，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不适用本解释。 **第二十一条** 本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